

# 제 안 설 명

## -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 경 과

- 가.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나. 제안일자 : 2007년 11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정례회
  - 2007년 11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강태원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 기준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
    -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제33조로,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변경함(안 제1조)
  - 월정수당 조정
    - 월 1,830,000원에서 월 2,360,000원으로 조정함(안 제3조)

### 3. 검토보고요지

#### (의회운영전문위원 윤기관)

-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기 타 의 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제안설명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를 “제33조”로, “제1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830,000원”을 “2,360,000원”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위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33조</u>.....<u>제33조</u>.....                      .....                      .....                      .....</p>
<p>제3조(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u>1,830,000원</u>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월정수당) ①.....                      .....<u>2,360,000원</u>.....                      .....                      .....</p> <p>②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삶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통보

1. '07. 9. 19(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구법 제15조의2>에 의거 구성된 「충청북도의회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07. 10. 31(수)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2.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여 동법 제34조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 정 비 : 연 4,632만원(월 386만원)

(1) 의정활동비 : 연 1,800만원(월 150만원)

(2) 월 정 수 당 : 연 2,832만원(월 236만원)

(3)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범위

나. 인상금액 : 연 636만원(현의정비 3,996만원 대비 15.92% 인상). 끝.

선 결 의 장	<i>[Handwritten Signature]</i>	구득리장	<i>[Handwritten Signature]</i>
접수일시	2007.10.31.	담당관	<i>[Handwritten Signature]</i>
처 리 과		담당계장	
	번호 0430047-002302	(공란)	

충청북도의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의원장

★지방행정서기 *[Handwritten Signature]*

지방행정사무관 *[Handwritten Signature]*

위원장 *[Handwritten Signature]*

협조자

시행 의정비심의위원회-7 ( 2007.10.31 ) 접수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133 /전송 043) 220-2119 / [haejinb@cb21.net](mailto:haejinb@cb21.net)

/ 공개